행복을 엮어가는 마장교육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2022학년도 가평마장초등학교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2022. 2.

가평마장초등학교

목 차

Ⅰ. 개요 .....

1. 학교계획
2. 학교계획 추진현황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Ⅱ. 세부 추진 계획 .....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3.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5. 안전사고 피해회복

[붙임] .....

1.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비상시 교직원 일반책무
3.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4. 통학차량 점검표
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Ⅰ 개 요

1. 학교계획

가.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예방 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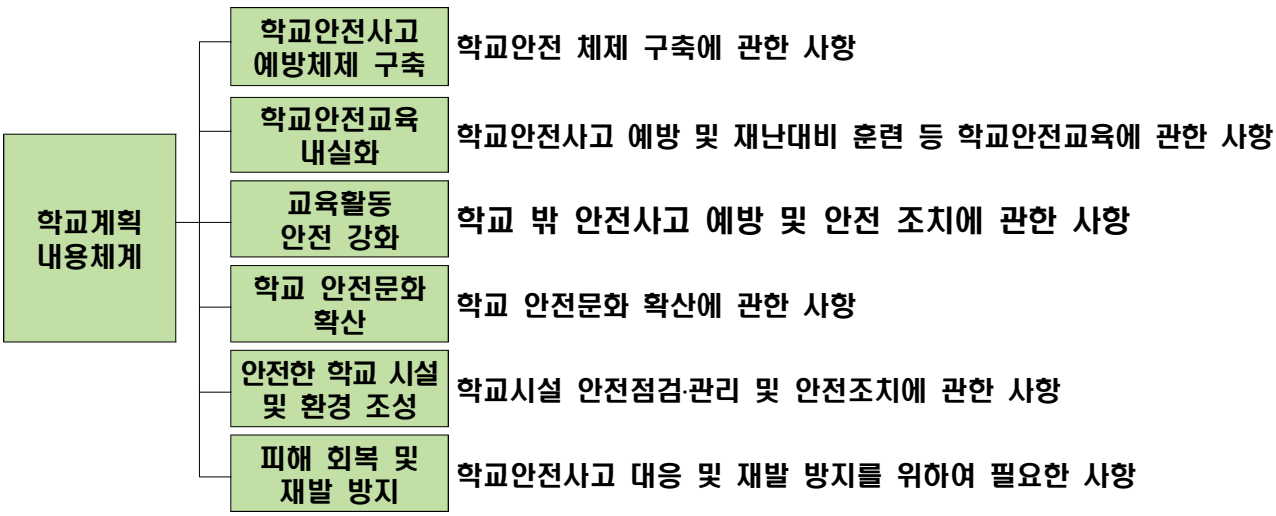
나. 학교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다. 학교계획의 내용체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라.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2. 학교계획 추진현황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 2021학년도)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 ~ 2023	2021	12	15	27	8	4	12	44%
	2022							
	2023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21년이 새로 시작하는 해)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21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77	12	15	27	77	12	15	27	100	100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21년)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 안전영역(필수이수시간)	시간	횟수
	1,2학기	1,2학기
생활안전(10)	15.7	13.3
교통안전(10)	11.6	9.6
폭력 및 신변보호(10)	24.5	17.6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10.2	9.0
재난안전(6)	6.0	5.8
직업안전(3)	1.0	1.0
응급처치(2)	1.3	1.3
계(51)	70.3	57.6

나.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 실적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 연수 연간계획은 준비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 학 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학교명	가평마장초등학교(유치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124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각담말길 15				
전 화	582-2765	FAX	582-2757	홈페이지	https://kpmajang.es.kr
교 장	○○○		학교안전책임관	○○○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2022년 2월 기준)

학생 (명)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6	10	15	7	16	15	9	78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12	2	12	1	0	27

3) 학교 비상연락망 : [교무실 별도 보관, 1/ 2차 연락망 구축]

4)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붙임1]

나. 안전관리 추진 조직

□ 평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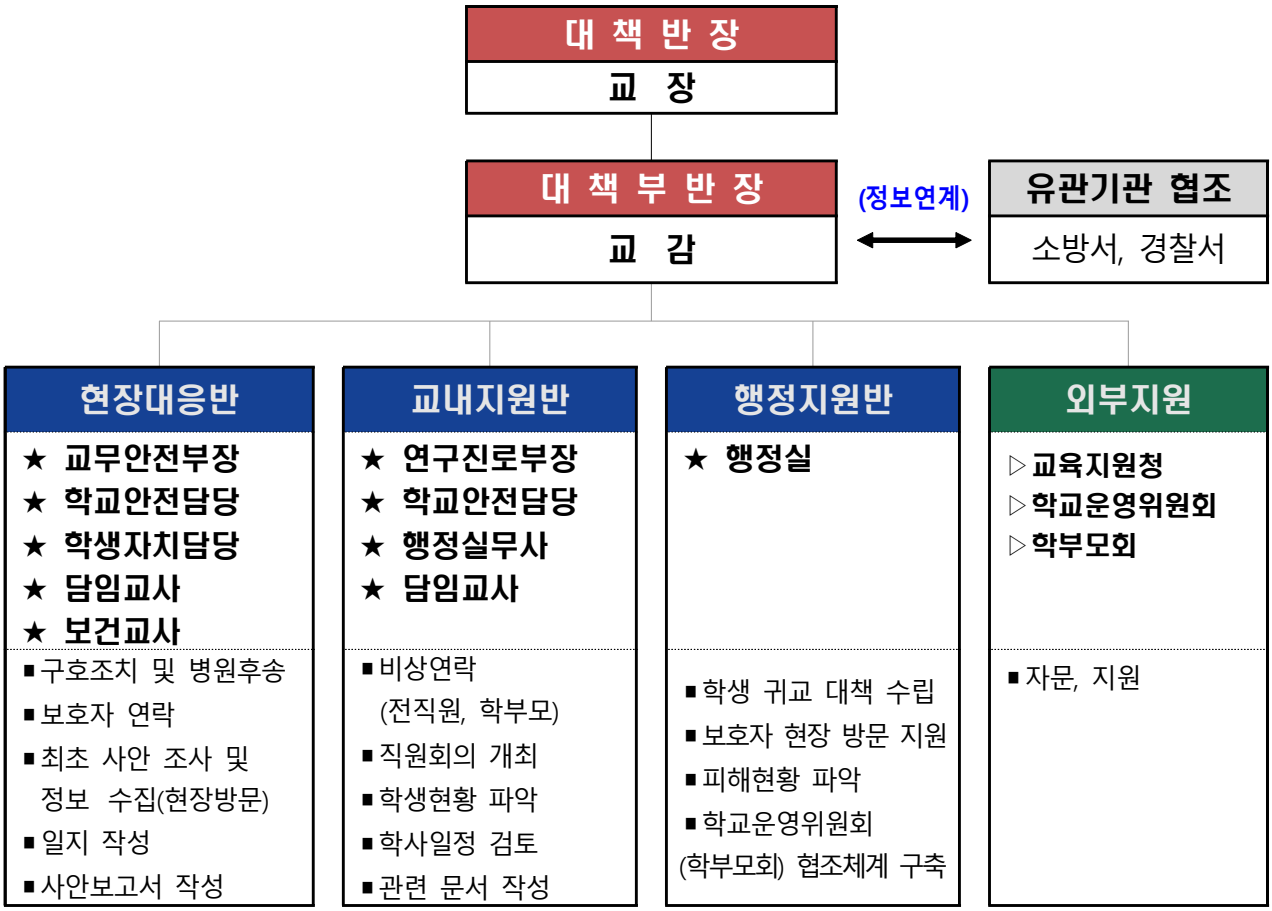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가능

□ 유사시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붙임2]

다. 학교 재난대응 및 구성 · 운영 [사고현장 지휘소]



대 응	상 황	학교 상황 대응
사 전 위 기 관 리	‣ 체제정비 ‣ 학교사고 대책반 업무분장 ‣ 교육 및 훈련 ‣ 사고인식 및 대응능력강화 ‣ 교원 대응능력 강화 ‣ 점검 ‣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 안전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

발생 시 위기관리 1단계

사고발생

상황보고 ⇢ (정보연계) ⇠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 (정보연계) ⇠ **교육지원청 상황실**

일일구**이**구조**삼**보고

1. 119신고
2. 구조 및 구호
3. 보고

※ 화재 등은 소리를 질러 먼저 알려야 함

※ 현장 보존

학교장

1. **사고대책반 소집**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결정 → 해결 방안 지시)
2. **사고 통지, 협조 요청**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등)

↑ ↓

교 감

1. **사고대책반 운영**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확한 정보 종합 및 분석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교육청 보고 (상황전파시스템)
2.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 ↓

⬇

발생 시 위기관리 2단계

현장대응반	교내지원반	행정지원반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 - 일지 작성 - 사안보고서 작성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직원회의 개최 - 학생현황 파악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학생 귀교 대책 수립 -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 피해현황 파악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 학생 관리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 학부모 지원 요청 - 긴급 상황 시 SNS발송 - 가정통신문 발송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상담 계획 수립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행 · 재정 지원 대책 마련

⇩

⬇

복 구

학교 정상화 (사고종결 및 후속대책 수립)
사고관련 안전교육 (예방 및 훈련)

라. 안전 관련 업무

직 책		임 무	비 고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교무안전부장 학교안전담당 담임교사 보건교사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연구진로부장 학교안전담당 행정실무사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담임교사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 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II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가. 교육활동 안전 대책

1) 연간계획

중점활동	추진 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평가자료
안전교육	학교안전계획 작성	1회		2월	안전	내부결재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수시	전교생	연중	담임	내부결재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활용 교육	수시	전교생	연중	담임	내부결재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선택사업)	월1회	전교생	연중	행정실 담임	사진자료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 교육 실시	4회	전교생	연중	담임	내부결재
	실험 실습 안전교육 실시	수시	전교생	연중	과학,담임	사진자료
	학교안전교육 주간 운영 (재난대응안전한국주간 연계 예정)	1회	전교생	10월	안전	내부결재
교직원 연수	학교안전계획 관련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3월	안전	내부결재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4월	안전	내부결재
교통안전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전교 다모임 연계)	2회	전교생	3월, 9월	안전	사진자료
	교통 규칙 및 보행자 안전통행 지도	수시	전교생	연중	담임	사진자료
학교 안전망 구축	CCTV 설비의 지속적인 관리	수시		연중	행정실	CCTV 점검일지
	배움터 지킴이 운영	수시	전교생	연중	보호인력	내부결재
심폐소생술	체인지(體/認/智) 심폐소생술 교육	1회	전교생	연중	보건 담임	내부결재
학부모 홍보	학부모 대상 안전 교육	1회	학부모	3월	안전	내부결재
	가정통신문 발송	월1회	학부모	연중	안전	가정통신문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 학교 내·외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3)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전 대책

가) 안전수칙

구분	안 전 수 칙		비고
출발 전	사전	·현장학습 장소 선정 (사전답사) ·현장학습 계획 의논 및 내용 안내하기 - 당일 일정, 업무분담, 안전지도 등	
	당일	·인원점검 및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안전지도 (전체학생)	
차 안에서	·안전벨트 하기 ·학생들의 가방 안전하게 정리하기 ·차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기 ·차창 밖으로 손, 얼굴 내밀지 않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멀미하는 학생 관리하기		
현장학습 중	·차에서 내릴 때 교사가 먼저 내려서 안전 확인하기 ·관람 시 반드시 학생 인솔하기 ·코스별 이동 시 학생 인원 확인 후 인솔하기 ·개인행동 금지 ·이동시 반드시 교사의 허락을 받고 이동 ·교육적으로 내용 지도하기 ·점심시간 학생 관리 철저 - 교사의 시선 안에 두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현장학습 상황을 수시로 관리자에게 보고 (도착, 출발 등)
현장학습을 마치고	·주변 정리정돈 철저 (쓰레기 처리) ·학생들의 물건 확인 ·차량 탑승 시 인원 점검 ·학교 도착 후 관리자에게 보고 ·사후평가 - 보고서		

나) 악천후 및 기상 특보 시 활동계획

(1) 우천 시

- 개별 우산이나 비옷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개인 대책 마련
-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활동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우천으로 인한 순연 미실시

(2) 미세먼지 및 황사 관련 주의보 발령 시

- 개별 마스크 지참 및 착용 후 실내 위주활동 실시

(3) 각종 기상 관련 특보 청취 후 학부모와 유기적 연락체계 유지

다) 사안 발생 시 보고체계

1) 사안(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에 연락을 취하고 시·군교육청 담당자에게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2)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3)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하는 중요 재난
   - 사망사고 또는 부상자 중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재난 및 사건 사고
   - 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매우 큰 경우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시

라)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붙임 3]

4)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관리

(가) 출결관리(등교시간 지연학생 관리) 상황 점검

◦ 1교시 수업시작 전까지 등교하지 않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확인 필수

◦ 통합학급담임교사 출결확인→특수교사 확인→보호자 확인 체제 구축

(나) 등하교 시 학교 주변 위험 구역 현장 파악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경로에 위험구역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

◦ 위험 구역이 있을 시에는 전직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등하교 길에 포함된 위험구역 상황 파악 후 관련 기관(시청 등)에 공문 발송하여 장애학생 사고 위험 안내 및 조치 협조 요청

(다) 등하교 안전교육

◦ 특수학급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안전교육 외에 등하교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등하교길 주의점을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지도

(2) 특수교육대상학생 교내 정규 학습 시간 내 안전 관리

(가)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내 이동 대책

◦ 중증 지적장애 학생 또는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활동을 위한 교내 이동시 적절한 보조 인력의 동행을 원칙

◦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담임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생의 교내 실종 및 교출을 미연에 방지

(나) 현장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 대책

◦ 중증 장애학생이 포함된 현장체험 학습 시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동행은 필수이며, 인력이 부족할 시 특수교사가 협조하여 현장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종에 대비하여 명찰 등 학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대비

◦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을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각각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현장체험학습 장소 근처의 경찰서 혹은 관할 지구대의 연락처를 미리 숙지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협조 요청

(3) 특수교육대상학생 교내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내 안전 관리

(가) 교내 방과후학교 참여시 안전 대책

◦ 중증 장애학생의 교내 방과후학교 참여시 특수학급 담임 및 통합학급 담임과 방과후 강사간 직접 해당 학생을 인계-인수

◦ 학생이 강사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방과후 부장-특수학급 담임-통합학급 담임의 순서로 연락체계 구축

◦ 방과후 외부강사 관리 및 연수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4)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교육과정 수록 안전교육 계획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

◦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

◦ 특수학급에서 배운 내용 등을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일관된 교육과정 형성

◦ 특수학급 학생 개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급운영계획서에 포함, 학급에서 보관

5) 통학차량 안전관리

가)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

(1) 학교주변 통학로, 교내 차량 통행로 등 위험지도 작성 등 대응을 철저히 한다.

◦ 저학년의 경우 위험지역 및 무엇이, 왜? 위험한지 등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내를 한다.

◦ 등·하교 학생을 위한 교문 바로 앞 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2)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방해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관내 경찰서, 교직원,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한다.

나) 통학버스 안전계획

(1) 승차대상 : 통학생 전체

◦ 시기 : 2022. 3. 2 ~ 2023. 2. 28

◦ 세부실천계획

세부실천내용	대상	목표	시기	담당
승하차 안전지도 및 버스 예절	1-6학년 학생	수시	3월~2월	담임
승하차 안전지도	1-6학년 통학생	수시	3월~2월	담임 차량보조원
통학버스 승차 시간 및 위치	1-6학년 통학생	1회	3월	행정실
운전자 및 동승자 교육	운전자, 동승자	월1회	7월~2월	안전
차량 안전점검	통학버스 2대	수시	3월~2월	행정실
통학버스 일일안전점검표 작성**[붙임4]**	통학버스 2대	매일	3월~2월	행정실

◦ 통학버스 사용 학생의 안전 규정

-인도 위(정해진 위치)에서 한 줄로 서서 기다린다.(장난으로 앞 친구 손대지 않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며 움직이는 통학버스 주위로 몰려들지 않는다. (앞 친구가 떠밀려 사고 날 수 있음)

-통학버스에 승차하여 자리에 앉은 후 내릴 때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맨다.

-통학버스 안에서 돌아다니며 장난하거나 큰 소리 내지 않는다.

-버스의 자리를 미리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쪽에서부터 앉고 앞쪽부터 내린다.

-승차는 저학년부터 하차는 선배들부터 한다.

-정해진 시간 5분 전에 나와서 기다린다.

-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때에는 반드시 통학차량보조원에게 연락한다.

-차에서 내려 버스가 떠나갈 때까지 서서 기다린 후 길을 건넌다. (건너편 차로 통 행차량에 사고 위험)

◦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월1회 통학차량 관련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대상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 실시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학교)에서는 상·하반기 연2회 정기 점검 실시

◦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치, 차량 변동사항(노후화 여부) 확인 등

- 학교(유치원)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반드시 이수

◦ 신규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 3시간 실시(도로교통공단) /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1) 등하굣길 유의사항 및 교통 법규 준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강화

(2) 학기당 3회 이상,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나.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대응

1 학교 안전사고 대응

사고대응 일이삼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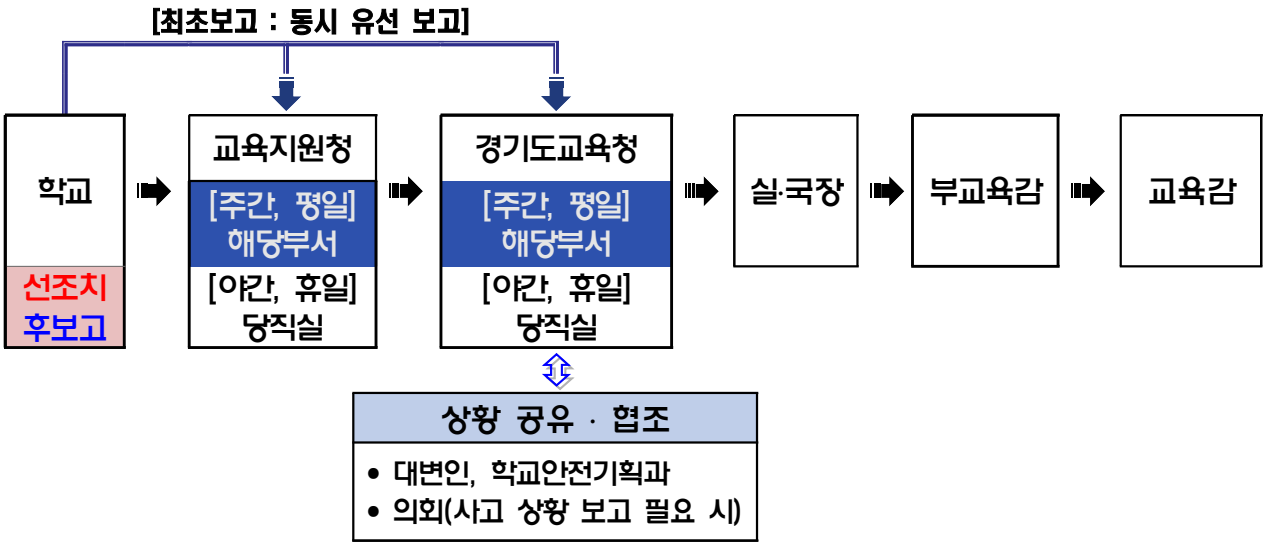
①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119에 신고** (심폐소생술 필요시 동시, 즉시 시행)

② **사고자 구조** (심폐소생술 즉시 시행, 2차 사고 예방 등)

③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

*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2 학교안전사고 보고 체계



-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서 제출
- 학교 보고 시기 및 방법 [3단계 보고]

구분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보고 사항
① 발 생 보 고	화재 발생 파악 즉시	•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 문자송신 병행	• 재난발생상황보고 내용
	발생 원인, 피해내역,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황 보고	• 공문시행	• 화재발생상황보고서 ※ 학교 현황, 사진 첨부
② 복 구 진 행	피해복구 추진사항보고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 재해복구경과 보고서
③ 복구결과 보고	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 재해복구결과 보고서

[출처: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

[붙임] 사안보고 서식

학생안전사고 사안보고서

■ 수　　신 : 가평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 보 고 자 : 소속)　　직)　　성명)

■ 보고 일시 : 2022년　　월　　일,　00:00

■ 기본 사항

학교명			
소재지	가평군	전화번호	
사안명		발생일시	2022.00.00. 00:00 ~ 00:00
사고 학생	000(0학년 0반, 남/여)		

■ 사안 내용

■사고경위

- 6하원칙에 의거 기술

■언론 보도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경찰 조사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사안 발생 후 학교 조치사항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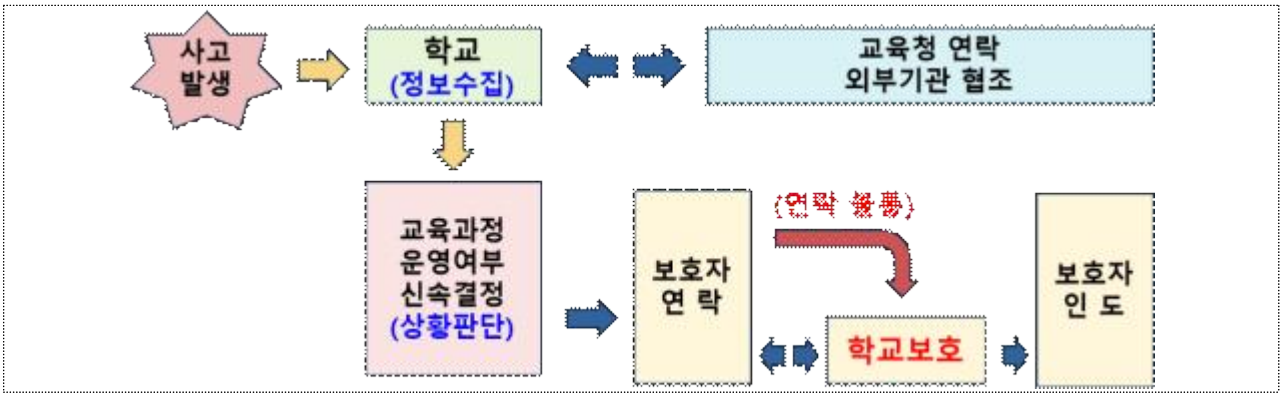
■ 교육지원청의 조치 및 지원 내용

가.

■ 기타

※ 추가보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양식 없이 사안보고서에 첨부

2) 재난 대응 지침



◩ 학생 안전 귀가 조치 요령 ◪

-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학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생의 통학로 유실 및 보호자(가정)의 피해 여부 확인 후 대응
- 통학로 유실 등 귀가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에서 보호조치 강구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학생 7대 안전교육 운영

○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생활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시수와 횟수 운영

○ 학생 안전교육 실적 보고(1학기(8월 31일), 2학기(12월 31일))

○ 원격 수업 시 경기도안전교육과정 교육 자료 활용

(근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2990(2020.3.6.)호)

◩ 2021년도 학생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교육부 고시 2019-214호) ◪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합계
교육시간	유치원	영역별 교육 내용을 통합으로 실시하되, 총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 이수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 각 영역별로 최소 1 단위활동 이상 운영)							33
	초등학교	10	9	3	5	5	0	1	33
	중학교	8	8	5	5	5	1	1	33
	고등학교	8	8	5	5	5	1	1	33
횟수		학기당 실시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2)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정 운영

가) 생존 수영 실시 계획

학년	내용	실시예정일	시간	비고
3, 4학년	○ 생존 수영 및 자유형 영법 기초교육	2022. 2학기 예정	10시간	교육지원청 계획

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바다, 계곡, 하천, 워터파크 등 수상 안전교육 시행

◦ 물놀이 위기 상황 시 적극 대처 방법 교육

◦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한 학생주도 사례별 안전사고 대처 학교 자체 매뉴얼 작성

◦ 생존수영 수업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 병행

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적극 홍보

◦ 학생・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적극 안내

◦ 안전사고 주의보 : 학생・학부모 주기적 문자 발송

◦ 여름방학 전 집중 안내 및 교육

3)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가) 과학 교재 교구 및 안전장구 확보를 포함한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과학실 안전점검(월 1회),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주 1회)실시

다) 과학실험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실시

라) 교직원 및 과학실 사용자 대상 과학실험실 안전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마) 시약관리를 위한 안전장구 및 설비 확충(밀폐시약장, 흄후드 등)

바) 수은 함유제품, 폐수 폐시약 별도 보관장소 마련 및 시건 철저

사) 과학실 안전 수칙, 응급대처요령, 비상연락망, 실험 안전 매뉴얼, 물질안전 보건 자료(MSDS) 게시 활용 교육

아)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초등과학전담교사 배치

자)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과학실 안전 집합 및 원격연수에 참여

4) 학년별 보건교육 계획

가) 연간 보건교사 보건수업 시수

◦ 1~4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2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 5학년은 체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4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 6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17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나) 학년별 보건교육 내용

※ 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반드시 들어갈 차시(총 31시간)

◦ 응급처치교육 연간 1시간(코로나19 상황인 2021학년도에 한함)

◦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연간 10시간(3개월 1회이상)

◦ 성교육 연간 20시간(성폭력예방 4시간 포함)

추진 내용	시기	대상	적용시간	비고	담당
6학년 보건수업	1, 2학기	6학년	창체	-17차시 실시	보건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20차시)	연중	1-6년	관련교과 창체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실시 -보건교사가 추가로 실시	담임 보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연중	전학년	관련교과 창체	-관련교과로 년 2회 이상 -보건교사가 추가로 실시 -고학년 흡연율 조사 등을 통해 필요시 개별교육 실시	담임 보건
감염병 예방교육	연중	전교생	창체	-손씻기 교육(상시)	담임 보건
가정통신문 (보건.안전 소식지)	월1회	전교생	필요시	-성폭력예방. 손씻기. 약물오남용, 감염병예방 등	보건

나.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2022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2022년 이수예정) 추진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12	15	27	4	11	15	100

※ 3주기(2021.03.01.~2024.2.29.)동안 모든 교직원이 의무 이수시간 100% 달성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1년 이수예정) 추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78	12	15	27	78	12	15	27	100	100

다. 재난대피훈련 연간계획(※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지침 변경 시 추후 변경 가능)

1) 재난대비 연간계획

중점활동	추진 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비고
연간계획 설명	-연간 훈련계획 토론회	1회	교직원	3월	안전	
황사 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1회	교직원	4월	안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계획	-지진 및 화재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피 훈련 -학년, 학생 상황에 맞는 놀이형 재난 대응 훈련 -실제적인 기능 점검 및 안전 진단 훈련 -나. 침. 반 5분 안전교육 관련 훈련	1회	전교생 교직원	5월	행정실 안전 담임	
민방공 대피훈련	-민방위의 날 일정에 맞추어 재난대피 훈련 (지진 대피 훈련 필수 실시)	2회	전교생 교직원	학기별 1회	행정실 담임	
화재대피 소방합동훈련	-화재 대피 및 대응 훈련 (연 1회 이상 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2회	전교생 교직원	10월	행정실 담임	

가) 비상배낭 관리

(1)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 및 보건실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한다.

(2)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넷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히 한다.

◦ 비상배낭 구성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지압 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라.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1)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가) 교내외 학생 출석 및 안전 관리

(1) 담임 및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 안내 및 출석 독려

(2) 교직원,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 지역 수시 순찰 강화

나) 참여학생의 안전귀가 철저

(1) 통학버스 이용 시 정해진 하차장소에 하차하여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학부모 또는 대리동행인과 귀가 가능

(2) 정해진 시간 외(중도 귀가) 귀가 요구 시에는 반드시 학부모와 사전 연락 및 필요 시 관리 교사에 통보, 귀가일지에 기록 등 조치

(3)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승·하차도우미 동승, 학생의 교통안전 지도 매일 실시 등으로 위험 노출 차단

다) 교육 활동 안전 확보

(1) 전기제품 사용 시 사전지도 철저 및 교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지도, 화재 예방 등 안전 지도 실시

2) 돌봄교실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계획

(1) 아동 안전 귀가 대책

◦ 초등돌봄교실 종료 시간 이후 통학버스 1회 운행

※ 학생 개인별 귀가 시간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한다.

◦ 부득이하게 일과 종료 전 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 인솔 요청

◦ 일일 안전지도 점검표를 작성 및 확인

(2) 안전 지도 계획

◦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월	주제	내 용	준비물
4	차탈 때	►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타고 내리기 ► 줄 서서 차 타기 ► 차에서 내린 후 차가 출발 한 후에 움직이기	인터넷 자료
5	교실에서	► 뛰지 않고 사뿐사뿐 걷기 ► 교재교구와 책은 소중히 다루기(던지지 않기) ► 간식 급식을 먹을 때 포크로 장난하지 않기	실습
6	횡단보도, 안전하게 길 건너기	► 횡단보도 이용하기 ►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확인하고 건너기 ► 앞을 보고 왼쪽으로 건너기	인터넷 자료
9	계단에서	► 계단에서 우측통행하기 ► 장난치지 말고 오르내리기 ► 뛰지 않고 바른 자세로 걷기	실습하기
10	복도에서	► 우측통행하기 ► 맨발로 다니지 않기 ► 복도에서 밀지 않기 ►뛰지 않고 바른 자세로 걷기	실습하기
11	자전거 타기	► 복잡한 길에서 자전거 타지 않기 ► 차가 달릴 때 옆에서 자전거 타지 않기	실습하기

◦ 초등돌봄교실 운영 종료 이전에 귀가하는 학생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직접 학생을 데려가도록 한다.

◦ 수요자 요구에 따른 학생의 개인별 시작 시간과 귀가 시간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3.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및 환경 조성

1)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3) 재난위험시설 안전 점검

○ 재난위험시설 관련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진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매주 안전 점검 실시

4) 공사 현장 안전 점검

○ 학교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법적 주요 의무사항* 이행

※ 정기시설검사 (법 제12조 : 2년/1회 이상), 안전교육 (법 제20조 : 2년/1회 4시간이상), 보험가입(법 제21조 : 매년 3월 2일 갱신)

○ '월' 안전점검 실시 및 놀이기구 유지관리

○ 놀이시설 이용 안전수칙 사용자(학생·학부모 등) 교육 및 안내

6)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및 이행

※ 발생 단계 : 평시-고농도 예보-고농도 발생-비상저감조치-주의보-경보

○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 전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체,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 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 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학기초 미세먼지 조치·대응사항 관련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등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75㎍/㎥, $PM_{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나.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1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1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가. 점검 일시 : 2022.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천원)
1		
2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2)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참고1, 참고2]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붙임 5]

다.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 급식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학생 및 조리종사원 손 씻기 실천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식재료품질 및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하여 위험요인 사전 예방

○ 학교급식소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협조

○ 학교급식 종사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 적극 안내 및 지원

○ 화상, 넘어짐 재해 등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

라. 학교 출입관리

1)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건물 출입구에 지문인식 잠금장치와 인터폰에 의한 접근 통제를 실시한다. (향후 추진과제)

2) 방문객의 학교 출입 방침과 절차

○ 학교를 방문하려고 하는 자는 출입증 교부장소(행정실)에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신분증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 모든 교직원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해 즉시 출입증 교부장소(행정실)로 인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퇴교 시 일일 방문증은 반납한다.

3)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 식자재 외 모든 물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수령한다.

○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을 학교에서 수령하지 않는다.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가.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협력 체제 구축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

나.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 실천

○ 학생 주도 안전 실천은 ‘학교 안전주간’, ‘재난 대응 훈련’ 등에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다.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안전점검의 날’ 연간 계획 수립 및 매월 ‘학교 안전점검의 날’ 실시

라.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 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마. 행사,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 각종 행사와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부터 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 생활화

○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학교안전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

5. 안전사고 피해 회복

가. 상담 및 치료 지원

1)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실시

○ 학교안전사고 및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계획 수립과 이행

○ 상담인력 배치시의 경우 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상담인력 미배치시의 경우 위기사안 발생 시 지역의 **위(Wee)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

○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 상담자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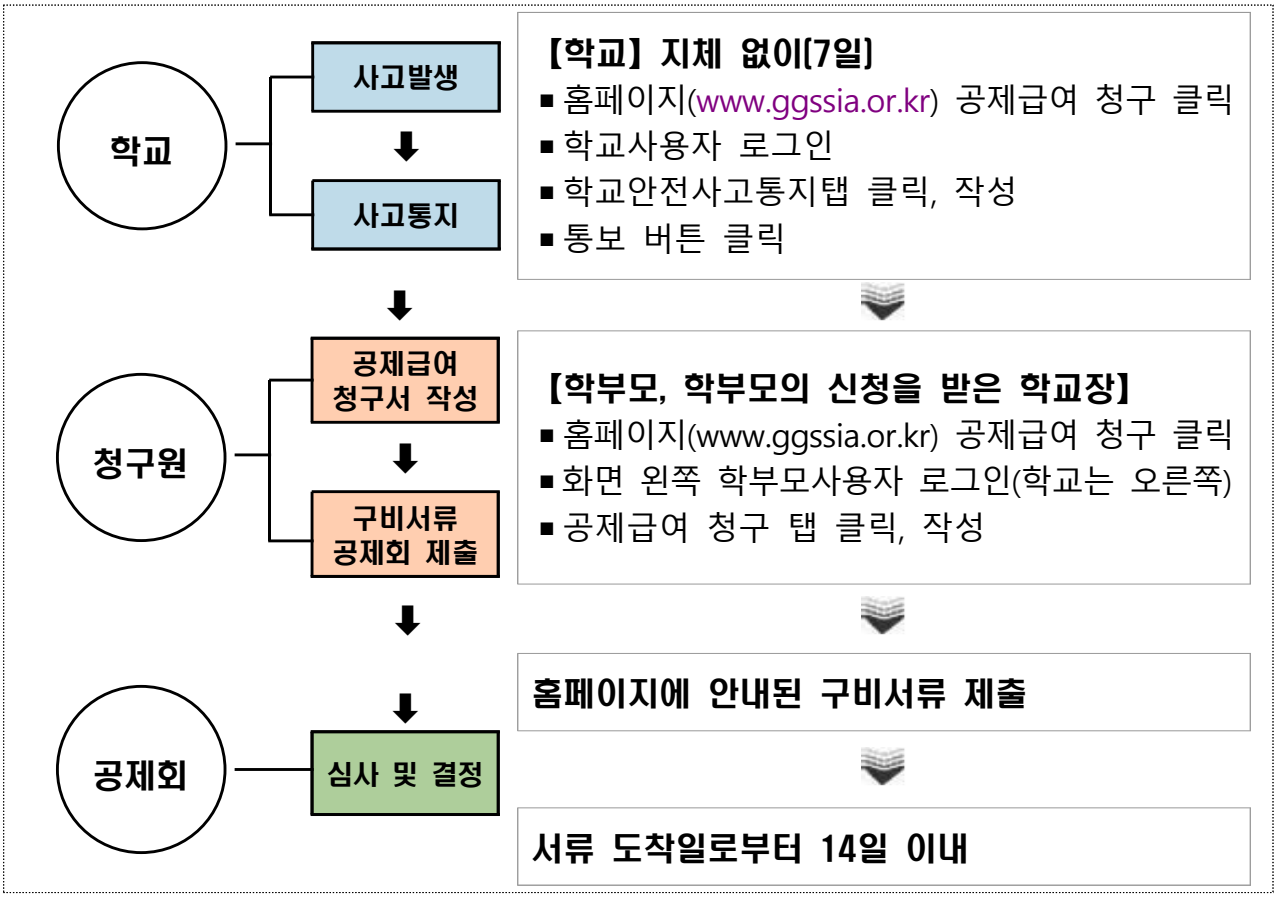
○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 학교, 유치원 등	학교, 유치원 등	공제회	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고발생통지서 작성 후 통보	학교안전사고 심사	학교안전사고 접수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신청

피해자	학교	교육감 공제회 자문위원회 심의	피해자	공제회
신청	접수검토	지원대상자 확정	치료 및 청구	보상

◩ 공제 급여 절차 ◪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복구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절차 ◪

▪ 재난발생 → 공제회로 재난 발생신고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경기인천지부 ☎ 02-781-0152

7. 부록

1.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비상시 교직원 일반책무
3. 현장체험학습사안보고서
4. 통학차량 점검표
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붙임 1]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가평마장초등학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각담말길



대형/소형 긴급차량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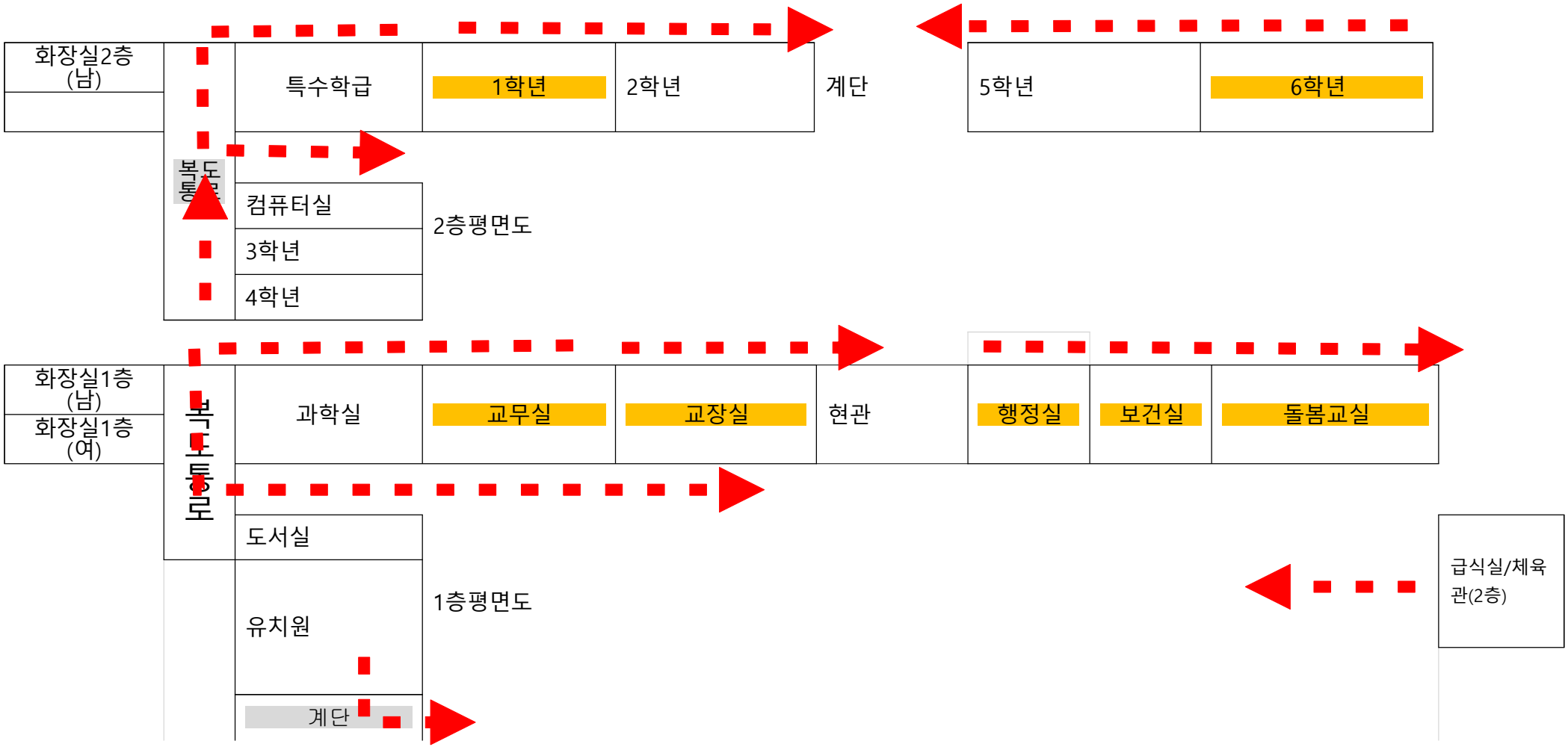
중소형 긴급차량 접근 경로

※교무실 - C동 1층

※행정실 - C동 1층

(출처: 네이버 지도)

2022년도 가평마장초등학교 대피도



※ 정해진 동선에 따르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층의 경우 교직원의 판단하에 창문을 통한 탈출이 빠르다고 생각되면 창문으로 탈출함
※ 6학년 교실의 경우 완강기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방법을 고려
※ 비담임 교사 및 교직원은 학생들이 모두 대피하는 것을 확인

[붙임 2]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1. 학교장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다.

2. 사고지휘관 (학교안전책임관/교감)

사고지휘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교육청, 언론을 비롯한 대외보고 창구 역할을 하며, 객관적이고 즉각적인 보고에 힘쓴다.

3. 교사

교사는 학생 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폰, 개인 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4. 보조교사 :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보건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6. 기능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행정직원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 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8.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9.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10. 학생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 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

-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한다.
-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11. 학부모/보호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출처 : 「학교 현장 실전대비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행 가이드, 2019. 교육부)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 수　　신 :
■ 발　　신 :
■ 보고 일시 : 2022.　.　.
■ 기본 사항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송부)

학교명		전화번호	
체험학습 소재지			
사안 발생 일시		사안명	
사안 발생 교사 또는 학생 정보	<사고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 사안 개요

가.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다.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붙임 4] 통학차량 점검표

통학차량 안전 체크리스트

분 야	점검(교육) 내용	확인
통학버스 안전관리 시스템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이며 차량 앞유리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이 부착되어 있다.	
	차내 모든 좌석에 3세~5세를 위한 안전띠와 안전시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다.	
	차량 내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다.	
	차량 내에 날카로운 곳이나 불필요한 물건이 없다.	
	차 맨 앞좌석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되어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반드시 보조교사가 탑승한다.	
	긴급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용 전화가 있다.	
	응급시 예비차량을 즉시 대치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통학버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행노선도와 운행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을 만큼 여유 있게 짜여져 있다.	
	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지점과 대기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승하차시 교통 혼잡이 없는 곳을 버스 승하차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	
	비상시 연락망을 학교(유치원) 내 및 통학버스에 게시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의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학로 지도를 마련하고 있다.	
운전자 및 통학 버스 안전담당자	운전자는 최근 3년 이내 법규위반이나 사고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15인승 이상 버스운전자는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운전자 및 통학버스 담당자들은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 실행(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훈련이 되어있다.	
	운전자 및 통학버스 담당자들은 운행 일일 안전점검표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안전점검표(예시)

<발췌 : 한국생활안전연합(Http://www.safia.org)>

□ 점검차량번호:(　　), (　　)인승, 차량번호(　　)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일: 20**.00.00~00.00.				
		월	화	수	목	금
운행전	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②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③ 긴급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④ 차량 내에 날카로운 곳이나 불필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점검했습니까? (브레이크, 엔진, 연료상태, 안전띠, 출입문 등)					
	⑥ 차량 내부와 외관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까?					
	⑦ 차량 승차인원에 맞게 태웠습니까?					
	⑧ 운행 전 지도교사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까?					
운행중	① 운전자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②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③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④ 지도교사의 출발 신호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⑤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버스 주변을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도로로 천천히 진입하였습니까?					
	⑥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출입문을 열었습니까?					
	⑦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차하지는 않았습니까?					
	⑧ 출발하거나 주정차 할 때 걸어가는 어린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⑨ 차 중에도 버스 주변을 살피었습니까?					
	⑩ 운행 중에 급정차나 급출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⑪ 차량 후진할 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까?					
	⑫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까?					
운행후	① 차량 안에 남은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까?					
담당자						

□ 확인자:

[붙임 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	□	◦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	□	◦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	□	◦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	□	◦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	◦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	□	◦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	□	◦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	◦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5. 교실 창호			
	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	□	◦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	□	◦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	□	◦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	□	◦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	□	◦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	□	◦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	□	◦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	□	◦
	2)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	□	◦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	□	◦
	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	◦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	□	◦
	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
	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
	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	◦
	9.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	□	◦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	◦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	□	◦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전기 시설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	◦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	◦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	◦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	□	◦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	□	◦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	□	◦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한다.	□	□	◦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	□	◦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	□	◦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	◦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	□	◦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	□	◦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1,000㎜ 정도로 한다.	□	□	◦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	□	◦
	마. 전기 용량이 30 ~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	□	◦
설비 시설	**1. 냉난방설비**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	□	◦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	□	◦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	◦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소방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	◦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가스 시설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	□	◦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	□	◦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	◦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	□	◦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	□	◦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	□	◦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	□	◦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	□	◦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	□	◦
실험 실습 시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	□	◦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	◦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석면	석면안전 관리법	◦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표9-6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점검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점검 내용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표9-6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설비
6개 분야	**26개 항목**

○ 점검 절차 및 방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집계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된 집계표의 소요예산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도교육청에 집계표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조치토록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